

4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등 표기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개정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42호, 2011.4.7)」을 3월 22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으며, 동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별표3

□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에 의하여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였다.
- 또한,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갑 경고문구〉

표기위치		
앞면	뒷면	옆면(한쪽)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u>원인</u> ! <u>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u>	경고: ⑨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u>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u>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 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경고문구
*  : 법령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는 경고문구(13.4.1~15.3.31)

■ ■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많아진다**

□ 보건복지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형어린이집: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지정하여 운영비(월 96~870만원)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서 ▲부모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월 143만원 이상)하여 지급하는 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의 25%인 약 34만명의 영유아가 우수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96개소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민간매입 포함) 75개소를 포함하여 총 9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 총 96개소: ▲일반 신축(민간매입 포함) 75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개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전환 19개소

○ 신축지역은 ▲서울시 40개소, ▲인천시 5개소, ▲경기 4개소, ▲기타 26개소로
- 지자체 수요조사(1월) 및 현지실사(2~3월)를 거쳐, 국공립 확충 필요성(취약지역 여부, 인근 국공립 설치여부 등)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 올해 확충 규모는 그간 확충 규모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도('12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4개소)의 약 3배 수준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현황('10~'13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수	42	45	34	96

〈공공형어린이집 700개소 추가 지정〉

□ 공공형어린이집도 4월부터 약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올해 총 1,500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778개소, 이용아동 수 4만3천명 ('13.1월 기준)

** 각 시·도에서 선정 공고 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하며

- 보육료 부모부담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 지급(월 143만원 이상)토록 의무화하여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질 향상을 견인(牽引)하고 있다.

* 보육료 부모부담분: 3~5세 영유아가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정부 지원단가(22만원) 외 보육료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함께 5월부터는 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 ▲평가인증 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급식 상황(식단표, 급식재료 구매처, 구매주기), ▲특별 활동 과목별 비용·실시 과목수·강사 인적사항 ▲회계 내역 등 공공형어린이집 세부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 향후 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14~'17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씩,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씩 확충하여 '13년부터 5년간('13~'17) 총 2,175(국공립 675개소**, 공공형 1,5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 매년 국공립 150개소(신축 50개소, 민간매입 100개소) 및 공공형 확충

** 국공립 675개소에는 장애아전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은 제외

○ 이를 통하여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17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농어촌, 도시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장애아,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공립·공공형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13년 상반기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은 지난 해 상반기부터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 '12년 지도점검 대상 (상반기) 500개소, (하반기) 800개소
 -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하여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 맞벌이 등 實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우선순위, 운영일(6일/주), 운영시간(12시간/일)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한다.

〈 주요 지도·점검 내용 〉

- ① 아동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및 어린이집-부모 담합 여부
- ②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수칙 미부착, 영아 탑승시 보호장구 미장착·안전벨트 미착용 및 등·하원 일지 작성 관리 등
- ③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과다 또는 부당 수납
- ④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운영일(6일/주), 운영시간(12시간/일) 준수여부
- ⑤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적정 여부('13.1.1이후 인가시설)
- ⑥ 급·간식 식단 이행 및 위생 관리 적정 여부

-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며,
 - 일정기간 동안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제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재정 누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반상회보 등에 부정수급 제보 및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항과 관련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신고된 내용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 “지자체에도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신고 센터를 활성화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법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등 발생시에는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 입양숙려기간, 최대 70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4.8(월)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4.12(금)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마치고,
 - 전국 산부인과, 청소년상담센터, 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포스터를 배포하여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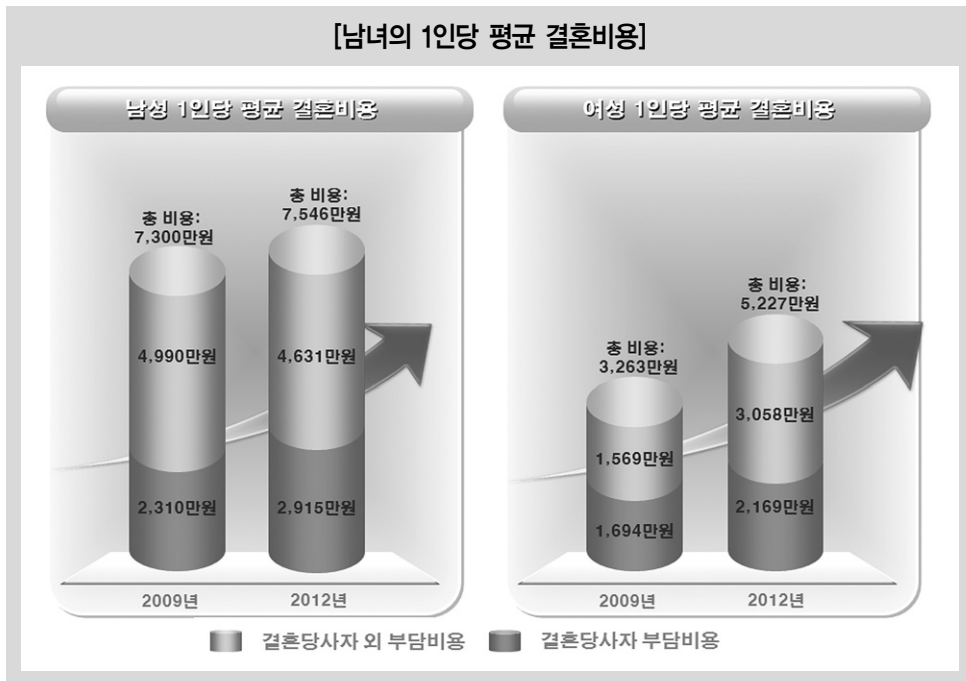
■ ■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2013.4.23. 시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 법령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 최종 의무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의 명칭), 체납액과 체납기간이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공개된다.
 - * 현재 2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약 2,50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1% 차지
 -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공개의 대상자로 통보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며,
 -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건수가 감소하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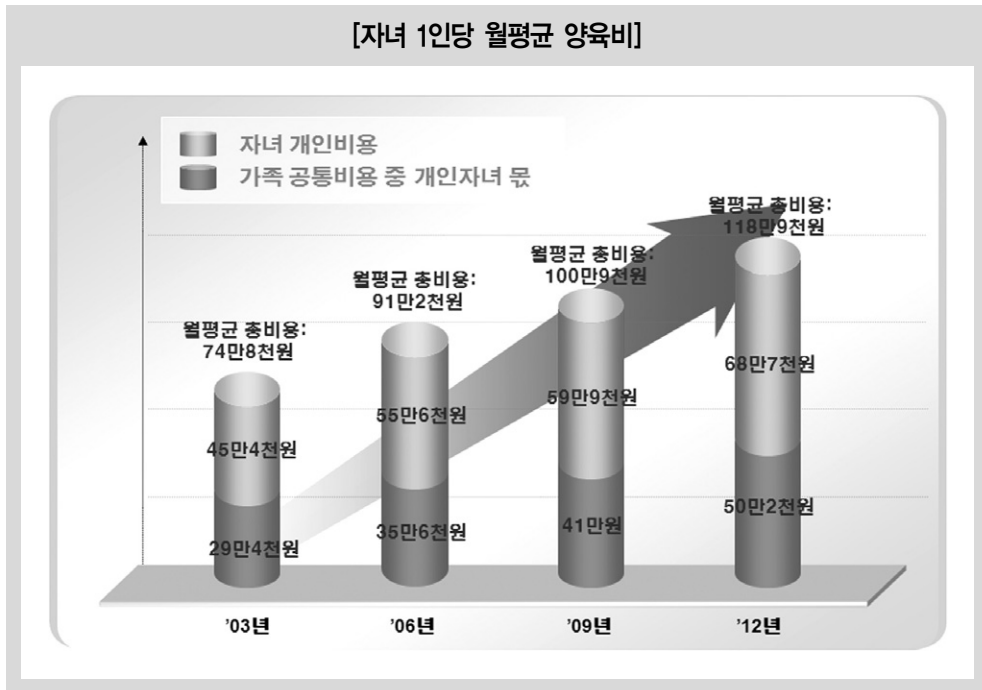
■ ■ ■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여,
 -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효과적인 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18,000 가구의 남녀 13,3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9년에 비해 미혼남성(69.8%→67.5%)과 미혼여성(63.2%→56.7%) 모두 감소하였다.

- 이는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이유로 남성의 87.8%가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족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 실제로 남성의 40.4%,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낮은 소득, 불안한 직장, 과도한 주거·결혼 비용 등이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1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은 평균 결혼비용이 7,545만 6천원, 여성은 5,226만 6천원을 지출하였다.
-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남성의 81.8%가 신혼주택 비용을, 여성의 44.8%가 신혼살림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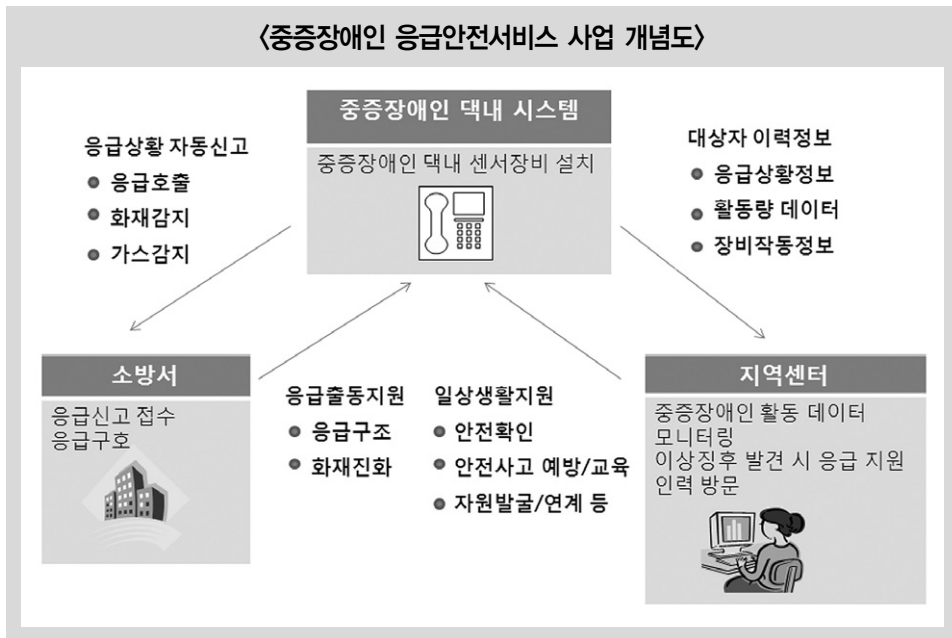
- '09년에 비해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12.2%→15.7%)했으며,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 부담도 늘어났다(100만 9천원→118만 9천원).
- 자녀 1인당 대학졸업(22년간)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되어, '09년(2억 6,204만 4천원)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가 월 22만 8천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혼여성의 28.4%가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응답하여 '09년(20.5%)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혼사유로는 경제문제(26.1%), 외도(24.2%), 성격차이(22.2%) 순으로 높았다.



- 20~30대 부인은 “외도”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고(20대 30.6%, 30대 25.2%), 40대 이상 부인은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다(40대 31.7%, 50대 이상 37.0%).
-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육아휴직제도 강화, 누리과정 확대 등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12년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01년 이후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12년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1.74명) 대비 낮은 수준
- 4월 중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출산·육아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제2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 본격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주택·노동·의료 등 경제·사회 각 분야가 출산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 특히,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복지부)는 20~44세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보사연)는 15~6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12년부터 통합 실시함.

■ 금년 11월부터 화재 등에 대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하여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 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 지역센터 배치 인력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 이번 시범사업은 '12.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급여의 월 한도액(최대

360시간/월, 12시간/일)의 제한을 고려하여

- 현행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며,

-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맥박센서와 CCTV 설치대상은 약 200 여명으로 추정

○ 즉, 화재·가스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사회의 소방서와 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 일상적인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확인은 물론 신속한 구조·구급 등의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사업참여 의향·지역사회 소방서 연계·사업비 자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우선,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도

○ 그 대상자는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2급 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구성되었다.

□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9월 이후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 금번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효율성 등 그 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자 및 지역 등 향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
- 특히,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인(모든 형태의 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또한 고용분야의 의무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차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 교육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하여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시행령 별표 1~5)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정부안) 4,461억원으로 확정

- 금일(4.16(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 규모는 4,461억원으로, 민생안정 3,616억원·일자리 495억원·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
-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응급의료기금 40억원 ↑)까지 포함시 복지부 세출 확대 규모는 4,501억원임

□ 추경예산안(정부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이 반영된 '13년 총지출 규모는 41조 5,149억원 ('12년(36조 6,928원) 대비 13.1%(4조 8,221억원) 증)

○ 예산은 25조 8,492억원 ('12년(22조 1,815억원) 대비 16.5%(3조 6,677억원) 증), 기금은 15조 6,657억원 ('12년(14조 5,113억원) 대비 8.0%(1조 1,544억원) 증)

(단위: 억원)

구 분		'12년(A)	'13년			'12년 대비	
			본예산(B)	추경(C)	최종(D=B+C)	D-A	%
총 지 출		366,928	410,648*	4,501	415,149	48,221	13.1
회 계 별	【예 산】	221,815	254,031	4,461	258,492	36,677	16.5
	○ 일반회계	219,745	251,736	4,457	256,193	36,448	16.6
	○ 특별회계	2,070	2,295	4	2,299	229	11.1
	【기 금】	145,113	156,617	40	156,657	11,544	8.0
분 야 별	【사회복지】	290,973	326,194	3,707	329,901	38,928	13.4
	○ 기초생활보장	79,028	85,532	2,796	88,328	9,300	11.8
	○ 취약계층지원	11,880	13,827	183	14,010	2,130	17.9
	○ 공적연금	124,415	135,539	-	135,539	11,124	8.9
	○ 보육	30,999	41,778	93	41,871	10,872	35.1
	○ 노인	39,040	42,937	407	43,344	4,304	11.0
	○ 사회복지일반	5,611	6,581	228	6,809	1,198	21.4
	【보 건】	75,955	84,454	794	85,248	9,293	12.2
	○ 보건의료	15,842	19,323	794	20,117	4,275	27.0
	○ 건강보험	60,113	65,131	-	65,131	5,018	8.3

* '13 본예산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약처 이체 금액(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 3,616억원

◇ 생계보호,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원) 지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인상 159.1→177.6천원(18.5천원 증)

-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 비용 추가 지원(75억원)

○ (긴급복지 등 강화)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원)하고, 정부

양곡대금 단가인상 반영(91억원)

* ① 생계비 기준완화(최저생계비 120→150%) 및 지원기간연장(1.5→3회): 489억원

② 금융재산기준 완화(300→500만원): 31억원

○ (의료지원 강화)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300억원, 신규), 광역 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14개소, 98억원) 등

* 의료비 지원 290억원(5.8천명 500만원/1인) 및 운영비 등 10억원

◇ 보건의복지시설 안전 강화 및 기능보강

○ (취약계층 보호시설 등) 아동시설(36억원), 장애인복지시설(32억원), 노인요양시설(99억원) 등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및 기능보강

○ (지역거점병원 지원)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강화(12개소, 104억원)

○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400개소, 43억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확충(5개소, 50억원)

◇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자체 복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14년 총원 예정인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총원(1개월, 8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국정과제 제도개선의 효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추가 증설(50억원)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495억원

◇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 추가 창출(5천개, 170억원)

* 이용자 24→26만명(2만명 증), 일자리 21→26천명(5천명 증)

○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 확충(2,700→3,500명),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확대(250→459개) 등 지원 강화(40억원)

* 장애·다문화·사태민 아동, 중고생 등의 아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117억원)

-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돌봄 확대(35억원: 수혜대상 28천명 증, 일자리 1,120명 증)

-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가사 등 종합돌봄 확대(82억원: 수혜대상 8천명 증, 일자리 2,667명 증)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추가 지원

○ (노인) 소득 지원, 사회참여 등을 위해 일자리 확대(1만명, 93억원)

* 사회공헌형 91백명(월 20만원), 시장진입형 5백명, 시장자립형 5백명

○ (장애인)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일자리(1,600명), 중증장애 복지 일자리(1,1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등 확대(3천명, 75억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350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지 조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장비비 지원 강화(250억원)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 펀드 조성(100억원, 신규)

* 정부 20%(100억원) + 국내·외 투자자(정책금융공사, 투자자, 건설사 등) 80%(400억원)로 총 500억원 펀드 조성

■ 2012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하여 1조 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2011년: 1조 6,235억원).

- 1,200만명중 750만명에게 1조 8,968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226만명에게 3,092억원을 돌려주게 되며,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6천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정산〉

- 2012년 건강보험료는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2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3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

*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음.

■ ■ ■ 3대 비급여 개선 논의 착수

-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2일 발족한「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획단은 실태조사 논의에 앞서, 선택진료비 등에 관하여 그간에 논의된 사항들을 보고받고, 향후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에 첫발을 내디뎠다.
- 이번 조사에서는 선택진료제, 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들의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의료서비스 공급자·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 크게 4가지 경로로 구성되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발표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정부 3.0 구현을 위해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검토하여 왔으며,

－ '13.4.19(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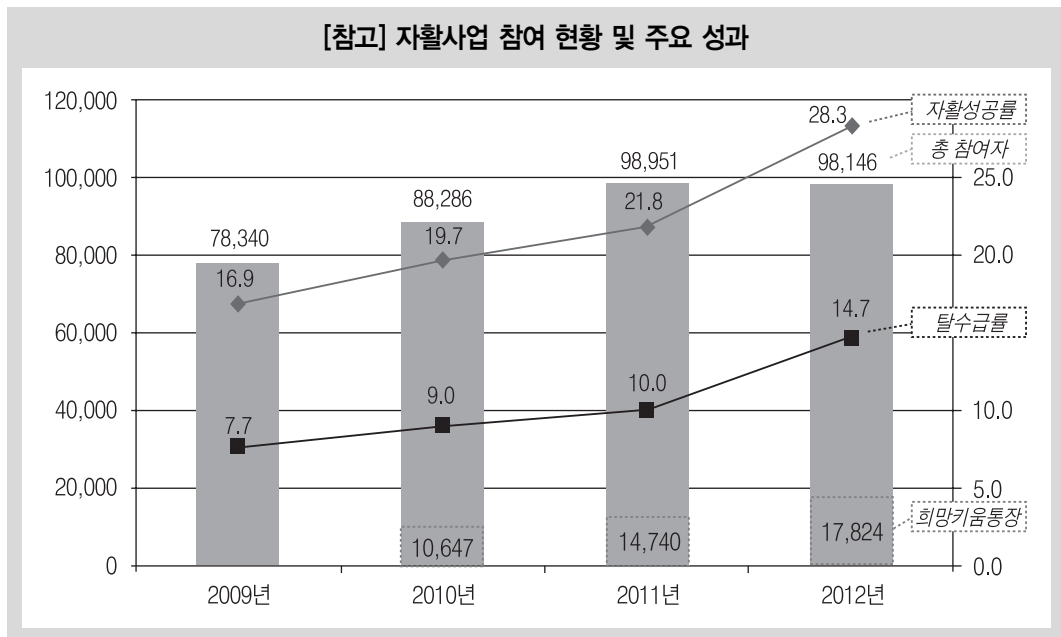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 양 부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전략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동 계획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활사업 시행 10여년 동안 수혜자 확대,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활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 특히, 자활공동체(자활기업)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왔다.

* (자활성공률) 자활사업 참여 기초수급자 중 탈수급하였거나,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
[16.9%('09) → 19.7%('10) → 21.8%('11) → 28.3%('12)]



○ 다만, 자활사업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에 앞장서기 위하여 정책 보호대상 확대, 수요자 중심 자활프로그램 운영, 고용-복지 칸막이 제거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내일드림 프로젝트’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 동 프로젝트는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비전으로 ‘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률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 ‘12년말 현재 9.8만명, 28.3% → ‘13년 목표 14.8만명, 30%

□ 우선, 금년에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3.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총 5.2만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희망리본) ‘12년 7개 시·도 4천명 시범사업 → ‘13년 17개 시·도 10천명 본사업

** (희망키움통장) 취업수급자 대상 ‘12년 1.8만가구 → ‘13년 3.2만가구(신규 1.4만가구)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13년 2만명 대상 신규 도입

○ 또한, 광역자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자활연수원은 ‘14년 하반기 개원을 위하여 자질없이 건립을 추진한다.

* (광역자활센터) ‘12년 7개 시·도 → ‘13년 10개 시·도 설치

□ 향후 주요추진과제는 첫째,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둘째,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셋째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넷째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방화, 다섯째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 첫째,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하고,

- EITC의 기초수급자까지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 셋째,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가칭)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 한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고,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 넷째,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사회적경제,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

- 을 활성화한다.
-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향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발휘토록 수직적·수평적 기능개편을 통하여 2017년까지 7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한다.
 -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단계적으로 밀착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 ‘내일드림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달 고용-복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내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하였으며, 5월 중으로 ‘고용-복지 연계 강화 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또한, 동 프로젝트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내일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직장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 → 2년으로 연장

-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1년동안(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 입법예고(3.7~4.16), 차관회의(4.26)
-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 * 지역가입자 자격 전환 후 보험료 증가 세대: 46.2%(‘11년)
- 이러한 경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시행일 당시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 적용된다.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 (예시) 직장가입자가 5월(5.2~5.31)에 퇴직하면, 6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6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 10일까지이므로 7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됨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천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9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연장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기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임의계속가입 중에 있던 사람들 중 1년 기간이 조만간 도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 (4.17)하여 조만간 개정 · 공포되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